●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3-1호

「물관리기본법」제28조에 따라 한강유역 물관리정책의 비전 및 추진방향을 정하기 위한 제1차 유역물관리종합계획(2021~2030)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3일

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

제1차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[2021-2030] 수립

1. 수립 사유

「물관리기본법」시행('19.6.13),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('21.6.11) 및 변경('23.9.25)에 따라 한강유역 물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10개년 계획을 제시

2. 계획의 성격 및 범위

- 가. 계획의 성격 : 유역 물관리 정책 분야의 법정 계획
- 나. 계획의 범위 : 「물관리기본법」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* / '21~ '30(10개년)
 - * ^①유역의 물관련 여건의 변화 및 전망, ^②유역 수자원의 개발·보전·다변화와 물의 공급·이용·배분, ^③유역의 가뭄·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, ^④유역의 물환경 보전 및 관리, 복원에 관한 사항, ^⑤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, ^⑥유역 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, ^⑦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물문화 창달 등

3. 주요 내용

| 내 용 | | |
|----------|-----|---|
| 비전 | | 물과 상생, 지속가능한 유역 공동체 |
| | | 지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한강유역, 소통과 협력으로 하나 된 공동체 구현 |
| 추진 과제 | 분야별 | 01 물환경의 적정성, 건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02 기후위기 대응 물 재해 안전체계 구축, 03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, 04 물 가치 창출 및 물산업 육성, 05 참여와 협력을 통한 유역 거버넌스 활성화 |
| | 권역별 | ⁰¹ 남한강 ⁰² 북한강, ⁰³ 한강, ⁰⁴ 한강동해, ⁰⁵ 한강서해, 안성천 |

4. 기타 사항

제1차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전체는 환경부(<u>http://www.me.go.kr)</u> 및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(<u>http://www.water.go.kr/han/main/main.do</u>) 누리집에 게시